## [ 별지 서식 제 8호]

##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에 대한 안내

-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,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및 통지 절차
  - ①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FAX 송부 (FAX: 051-991-0912)
  - ② 담당자 접수 ( 🕿 : 051-991-0911 )
  - ③ 접수확인
  - ④ 삭제 또는 분리보관 등의 처리 ( 접수 후 약 7 영업일 내외 소요)
  - ⑤ 신청서 상의 요청방법으로 청구결과 안내
- ※ 붙임: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1부.

##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

## ■ 으뜸자산운용㈜귀중

정보주체	성명	
	생년월일	
	연락처	
유의사항	<ol> <li>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는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8 조의 3 에 따라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, 삭제로 인하여 자료열람 등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 33 조의 3 제 1 항에 근거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는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금융거래 종료 후 5 년,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20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따라 동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</li> </ol>	
결과 통지 방법	□ 전화 ( 문자 / 알림 ) : □ 직접내방 □ e-mail	

상기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귀사와의 금융거래 종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